경기도 공고 제2021 - 6174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 (기간)	처분사유	처분근거
(주)다한종합건설 (홍OO)	경기도 화성시 영통로61번길 6, 504호(반월동, 제일프라자)	건 축공 사업 (02-1265)	영업정지 5개월 ('21.11.1. ~ '22.3.31.)	종합건설업 등록기준 미달(자본금) - 2018년말 자본금(5억원) 기준 미달	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
크리스탈 종합건설㈜ (윤OO)	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3길 60, 1층 102호(일동)	건축공사업 (10-2571)	영업정지 4개월 ('21.11.1. ~ '22.2.28.)	종합건설업 등록기준 미달(기술인력) - 2019.8.1.~2020.9.30. 기술인력기준 (5명)에 2명 미달(3명 보유)	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